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기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

유 주 선**

<차례> _____

- | | |
|--------------------------|--------------------|
| I. 서론 | IV. 예금자보호기구의 운영 방향 |
| II. 예금자보호기구의 운영 성과 | V. 결론 |
| III. 보험·예금의 통합 운영과 그 문제점 | |
-

주제어 : 예금자보호기구, 보험과 예금, 제3자 보호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업법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예금과 동일한 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방법, 기금관리 및 보장한도 역시 획일적인 방법만을 고수·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국가 운영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는 어디까지나 은행 내지는 예금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금보장”이라는 확정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의 특성에 비하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계약이전이나 재보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계약이 유지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보험의 영역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개인고객의 보호라는 취지를 위해서라면, 금융상품별로 별도의 보호제도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서비스의 제공대가”라는 성격상 금전의 대차거래나 투자거래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상품별, 보험 요소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보호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경우 현행의 통합 예금자보호제도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금과 보험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19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 강남대학교 교수

- 논문접수일(2020.01.16), 심사개시일(2020.01.28), 게재확정일(2020.02.25)

생명보험은 계약이 비교적 장기이고 저축성보험이 많아 해약환급금이 많을 것이나 손해보험은 단기계약이 많고 보장성 보험이 주를 이루며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산정 등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바로 예금보험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하여 예금자 등을 보호할뿐더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이다.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고 예금자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의의 일반 소액 예금자는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금자보호기구는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여 선의의 일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쇄적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Bank-run)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또한 동 기구는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금융기관의 도산 위험 발생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신용관리기금과 신탁안전기금이고, 보험보증기금의 도입 7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의 예금자보호기금이 마련되었다. 현재와 같은 통합된 금융권 전체의 예금자보호 제도로 운영하게 된 것은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이를 약칭하여 ‘예보’라고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통합적인 감독 체계와 함께 각각 금융권별로 흩어져 있던 5개의 예금보험기금이 통합되어 현재와 같이 보험과 은행 그리고 상호저축은행과 금융투자 등 통합된 예금자보호제도가 1998년 4월 1일 출범하게 되었다. 1998년 4월 1일에는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던 예금보험기구를 예보로 일원화 할 당시에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는 전체적인 하나의 틀에서 운용되지 않는 모습이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금 형태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이 때 은행에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포함된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면서 지역별·지구별·품목별·업종별 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출자금의 형태로 설립된 금융기관은 당해 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설립 근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예금과 동일한 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방법, 기금관리 및 보장한도 역시 획일적인 방법만을 고수·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국가 운영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금자보호법상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기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예금자보호기구의 운영 성과

1. 개념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속계약으로서, 보험기간 동안 손해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급부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계약상 급부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해당 계약의 연속성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 우리

1) 이를 다른 말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라고도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용어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용어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라의 경우 예보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예금자보호기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공하는 한편, 보험회사 부실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보험 상품은 신체나 재산상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치료, 유족의 생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다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안전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보의 예금보험제도는 구제금융의 최소화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회사 파산을 고려하여 정리를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전 파산 직면에 처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예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전 단계에 직면하면, 예보는 감독당국과 함께 보험회사 파산위험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조기 개입, 추가자본 확충 등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이전 등의 보험계약 해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998년 이후 업권별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은행이나 증권 등의 금융소비자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자까지 보호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가운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의 경우 몇 차례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지만, 보험의 경우 ‘청산절차 내 우선청구권 부여’ 등 간접적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이였다.²⁾

보험 상품의 경우 은행이나 투자 상품과 다음과 같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보험 상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행사를 할 수 있고, 미래 손실규모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만약 사고 시 피해자들의 충분한 자금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보험은 다양한 영역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기구와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연결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이해의 명료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임종호·이순규, “주요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KDIC 조사분석정보(2018년 6월), 1면.

상품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면을 들 수 있다. 생명이나 건강 등의 담보를 필요로 하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장기 계약의 특징을 고려하여 투자와 저축성을 가미한 상품도 있고, 재물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제공되기도 한다.

2. 운영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가장 먼저 은행을 들 수 있고,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은 부보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 역시 부보금융회사에 해당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다.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가 부보되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밖에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이 해당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부보되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된다.³⁾

부보금융회사가 지급 거절과 같은 파산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예금 등이 부보예금이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 특히, 보험 영역에서 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개인 가입 보험계약’, ‘퇴직 보험’,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⁴⁾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3) 2019년 11월말 현재 파악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금융투자회사 132개, 상호저축은행 80개, 은행 54개, 보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의 경우 24개와 손해보험 21개로 45개 회사에 이르고 있다.

4) 여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에 해당한다.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법인인 보험계약',⁵⁾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⁶⁾ 등은 후자에 속한다.

1996년 공사 출범 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만 한시적 보호한도를 정하여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한 바 있다.⁷⁾ 하지만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8년 8월 1일 이전 가입분은 전액 보호하고,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분의 경우 88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 보호하고, 88만원 이하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000만원까지 보호하였다.⁸⁾ 그 이후 2001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는 1인당 5,000만원을 보호하였고(결제성 예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보호), 2015년 2월 2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에 대하여 각각 1인당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3. 성과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른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에 지출한 바 있다.⁹⁾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저축은행계정을 통해 총 4조 5,27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보험사고가

5)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6)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된다.

7)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한시적 기간에 적용된 바 있다.

8) 기세룡,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32760 판결-", 「민사법연구」 제13집 제2호, 대한민사법학회, 2005, 249면.

9) 장건식, "한국의 은행 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적정성-은행의 부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10면.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에는 특별계정을 통해 총 27조 1,71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그린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계정을 통해 22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¹⁰⁾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기업 및 개인파산으로 인한 대지급 수요증가로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1998년 9월 감독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은 후 1998년 11월 서울보증보험회사로 합병하고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도모한 바 있다.¹¹⁾ 1999년 3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 자산·부채 평가결과 순자산부족액이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같은 해 6월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어 2000년 8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2조 6,5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2000년 9월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이 100%에 미달하는 대한, 국제, 리젠트, 쌍용, 제일 등 5개 사에 대해서는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실금융회사로 결정한 후 공개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한화재보험은 2001년 12월, 국제화재는 2002년 1월 각각 대한시멘트(주)와 근화제약(주)에 매각되었으며, 리젠트화재보험회사는 공개매각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2002년 6월 삼성화재보험회사 등 5개사에 이전되었다.

예금보험기금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 채택된 2003년 이후에는 저축은행 이외의 부보금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없었으나, 2012년 영업 정지된 그린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손해보험계정을 통하여 제3자 계약이전 시 자산부족분에 대한 출연금 226억 원을 인수하는 MG손해보험 앞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¹²⁾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는 2013년 5월 금융위원회의

10)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기 위하여 MG손해보험이 같은 해 2월에 설립되었다.

11) 정경영,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보증보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254면 이하.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업에 포함되기는 하나, 통합기금 이전의 1989년 보험기금부터 보증보험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보증보험사도 가입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보증보험의 파산에 따라 손실을 입은 계약자는 전문적인 평가능력을 지닌 금융기관 등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기금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보증보험사 파산의 영향이 보험권과 큰 관계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손실은 보험권의 손실이 아닌 금융권 전체 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일반손해보험업에 대한 지원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12) MG손해보험은 2019년 6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2400억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6일 내로 자본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2018년 초 RBC비율 하락으로 같은 해 5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후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자산 등에 대한 경영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2013년 11월 파산재단을 설립하였다.

III. 보험·예금의 통합 운영과 그 문제점

1. 상품별 본질적 특성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들을 우선 상정한다. 또한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추상적인 위험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위험단체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단체 내에서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산출되고, 미리 각출된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을 형성한 후에 약정된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단체의 구성원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결국, 보험이라 함은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¹³⁾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¹⁴⁾

반면, 예금이란 은행 등 예금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면 이후에 일정한 원리금(원금 및 이자)이 지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보관상의 용이 및 안전성, 이자 수익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며, 예치된 금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과 달리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은 예금자가 예치된 금원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예치된 금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¹⁵⁾ 물론,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 해당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될 것이다.

예금과 보험은 “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한다는 목적은 공통되지만, 예금은 반드시 어떠한 위험을 특정하여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예금은 위험단체를

10월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개선안을 제출받아야 할 것이다.

13)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10면.

1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도 2172 판결.

15) 김정호·최병규·유주선·원동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연구보고서, 한국손해보험협회, 2013, 32면 이하에서는 은행의 예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구성하거나 대수의 법칙에 따른 사고발생률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면서 이를 개인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되는바, “위험의 분산”이라는 것이 없다.¹⁶⁾

예금자와 달리, 보험계약자는 일정 사고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급한 보험료를 당연히 반환해 줄 것을 구할 수 없고, 사고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예금은 확정적 지급청구권인 반면 보험은 그렇지 않다 할 것이다.

2. 금액 반환의 차이

보험회사의 예금자보호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기납입 보험료 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은행이 예금계약에 따라 예치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예금과는 달리, 보험의 경우 보험단체의 구성을 전제로 하며 보험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¹⁷⁾

둘째,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들이 반환받는 금액은 납입보험료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보험은 원래 보험계약자가 관련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지급을 대가로 보험자에게 해당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보험료는 개별 분산위험의 원칙이 반영되어 결정된다.¹⁸⁾ 이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금원을 예치하는 예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 납입 시 부터 위험이 인수된다. 은행의 예금과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등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의 경우 위험인수의 대가로

16)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5면.

17)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박영사, 2015, 16면.

18)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5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장래에 반환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래에 반환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치하는 예금과 동일한 보호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겠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는 계약자가 금융기관을 신뢰하여 해당 금원을 예치하였음에도 해당 금원이 금융기관의 일방적 사유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다.¹⁹⁾ 반면 비록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계약자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지급의 자력을 평가하는데 신뢰를 한 것이고 중도해지 시 보험료를 환급해줄 것을 신뢰한 것은 아니다.²⁰⁾

3. 지급 절차의 차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예금자보호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일정 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자력을 신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상 정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²¹⁾

특히,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여주는 인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정도를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손해사정 절차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손해사정 절차는 보험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²²⁾ 이러한 손해사정은

19) 이순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8면.

20) 양승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효과”, 「법조」 제25권 제4호, 1976, 5면.

21) 독일 보험계약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 시 사고의 검증과 손해의 사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84조와 제85조를 참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절차를 계약법에서 정해 두고 있지는 않다.

22) 김정주,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14, 33면 이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도 중요한 과정이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정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5조 참조).

나이가 보험업법 및 상법 등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²³⁾ 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하게 상법 및 보험약관 등에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은행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4. 문제점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예금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통합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은 보험에 대한 사항을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보험은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의 평가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렵다. 보험은 미확정 조건부 상품으로 사회보장성의 측면이 강하고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나 자국의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국은 상품별, 업권별로 자국에 알맞은 보험계약자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는 예금,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예금자보호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이러한 분리체계를 통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형태는 은행권 중심의 설계로 인하여 보험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참조 자세한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269면 및 276면.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예보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이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특히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각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는 각 부보금융기관이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제도는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도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면책사유 주장여부 판단, 손해사정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보험료 지급의 경우 및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따로 준별하지 않고 기타 예금과 동일하게 통합하여 취급하는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계약자와 예금자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별도의 계약자보호제도 시스템을 구축한 예는 새마을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새마을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규율되는 바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였으나, 2003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²⁴⁾ 신용협동조합이 통합예금자보호제도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고 독자적 예금자보호제도를 갖춘 가장 큰 이유는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경제적 위험이 있는 다수의 다른 금융기관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신용협동조합 내부적으로 부실조합 정리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이 제고되었다는 사정, 연간보험료의 인상이 조합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24) 정찬우·김자봉, “서민금융기관 경영진전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61면.

있다는 사정,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이 예금자보험공사 중심의 통합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제외된 이유를 고려하여 볼 때, “보험”의 경우라고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²⁵⁾

만약 다른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 관련 금융기관이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인상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것은 물론 위험율이 다름에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게 되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본 원칙인 대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보험 영역의 경우 보험회사의 파산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할 자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자에 따라 계약이전이나 재보험과 같은 독자적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즉, 조직의 안정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담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²⁶⁾ 이는 은행이나 증권의 영역에서 볼 수 없는 보험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보험 영역은 신용협동조합보다도 통합예금자보호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임을 알 수 있고,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IV. 예금자보호기구의 운영 방향

1. 일본과 우리의 운영 비교

일본에서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이다. 이 당시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금융자율화가 추진되면서, 예금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1년에 전국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가 설립되었다.²⁷⁾ 일본은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25) 유주선, 「보험법(최신 개정판)」, 씨아이알출판사, 2018, 3~4면 참조. 보험의 원리로서 동일한 위험 하에 추상적인 위험단체와 통계적 기초 및 대수의 법칙에 따른 보험료 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26) 류근욱, “보험회사 파산 시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의 보험금 지급 사례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1호, 예금보험공사, 2010, 57면 이하.

27) 일본 국내에 본점을 소재하고 있는 예금취급기관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의 일본지점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경우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6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각 기금은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계약자보호를 위하여 당초 보험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구제보험회사를 모색하고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서 자본결손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였다.²⁸⁾ 그러나 보험회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구제보험회사를 찾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어 일본은 보험업법을 다시 개정하여 1998년 12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계약자보호기구”를 신설하였다.²⁹⁾

일본의 경우, 손해보험업권과 생명보험업권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파산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경우, 국내 제도와 비슷하게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활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목표기금제를 통해 적정한도를 정하여 두고 있고, 연간 할당액의 사후적 배분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다. 이는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장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계약 유지와 발생손해에 대한 보장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즉, 예금과는 달리 보험은 미확정부채에 대한 이행보장이라는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험계약기간 동안만 지속되면 충분한 것이고, 설사 중도 해지된다 하더라도 수입보험료에 포함된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미이행 대가부분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의 “원금보장”의 은행 예금상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손해보험계약자제도상 보험금지급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은 모두 보호대상이 되나, 보상비율에 대하여는 조정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연금지급형, 적립형보험, 기타 질병이나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는 예정이율도 변경이 가능하다. 즉,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금지급금과 해약환급금 등을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비례형의 보험계약자 손실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³⁰⁾ 일본의

28) 당시 파산 사고 한 건당 자금지원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명보험기금의 경우에는 2천억 엔이고 손해보험기금의 경우에는 3백억 엔이었다. 특히,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김선정, “일본의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20면 이하.

29) 정봉은,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20면 참조 다만, 가계지진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여전히 100%를 유지하였다.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파산보험회사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약을 직접 승계하거나 보험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등의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권한이 있다.³¹⁾ 특히 파산보험회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자금지원, 보험계약의 승계, 파산보험회사의 직접 인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³²⁾

일본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사실상 전형적인 예금수신기관으로서의 “은행 등”에 국한하고 있다.³³⁾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있다. 증권회사 역시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배제되어 있다.³⁴⁾

일본은 전형적인 예금상품인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계약, 여행지수표, 지불보증수표 등에 까지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양 국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본과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은행 예금”에 국한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된다기보다는, 금융기관과 개인이 “거래 관계”를 맺는 경우라면 이를 모두 포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기구는 예금자보호제도라기보다는 사실상 개인고객의 금융거래보호제도로써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한도와 적용방식은 각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30)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험금지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정액으로 보호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복합적 성격의 고려나 보험계약의 유지와 같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보험계약자보호라기보다는 위로금지금형태의 보호에 그치고 있다.

31) 예금자보호기구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유주산 권은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제업무에 대한 법적 쟁점과 성과분석”, 2015년 외부연구지원 공사논문집 통권 제12, 2015, 61면 이하.

32)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정관 제54조를 참고하기 바람.

33)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예금”을 수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폭넓은 범위의 부보 대상 금융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34) 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1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제1항 참조

2. 독자적 예금자보호기구 설치 방안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두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보험보증기금이 예보로 통합되기 이전에 보험보증기금을 관리하는 보증기금관리위원회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예보로 통합되기 이전의 보험기금관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경우, 복수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복수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의 장점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은 계약이 비교적 장기이고 저축성보험이 많아 해약환급금이 많을 것이나 손해보험은 이와 다른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보험금 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현행 보험업법상 제3자 보호제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과거 보험보증기금이 설치된 때에도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외환위기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현행 제도가 금융권역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1990년대 말 위기상황과는 다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³⁵⁾ 현행 예금자보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은 업종간 특성을 무시한 통합형 구조 하에서 획일적 운영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산업이 내재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증권투자자 보호와는 그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35)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 12월 29일 제정 당시 은행 등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1998년 4월 1일 예금보험공사·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금융업종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자,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외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 때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법률적 고려 때문에 각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통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6) 현행 통합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면 은행, 생·손보, 증권, 종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권역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바, 이전 금융권역별로 독립 운영되던 5개 보호기금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예금자보호제도로 통합되어 본연의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점에서 현행 국내 통합형 예금자보호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³⁷⁾ 따라서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종, 특히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보험회사는 통합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⁸⁾ 현행과 같이 예금자보호제도를 단일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권별 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별도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이원적 보호체계의 개선 필요성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할 경우 손해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 등은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손해보험 중 의무보험의 피해자도 5천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의무보험계약의 제3자인 피해자는 피해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3년이다.³⁹⁾ 이때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고, 손해보험협회장은 어느 손해보험회사 지급불능 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확인을 거쳐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구조이다. 보험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의한 보장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다.⁴⁰⁾

37) 현행 국내 통합예금자보호제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① 예금보험기금 계정간 자금 거래가 가능해 특정업종의 부실을 여타 업종의 기금으로 메우게 되어 기금을 지원한 계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② 각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예금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③ 각 금융기관의 차이 및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만을 예금보험에서 분리할 경우 다른 금융권도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통합예금보호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보험회사만 공적자금의 손실분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분리가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다. 성대규·안종민, 보험업법 제2판, 도서출판 두남, 2014, 683면.

38) 이종호, “일본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와 국내 시사점”, 월간 「손해보험」, 통권 제594호, 한국손해보험협회, 2018, 30면.

39)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682면.

40) 자동차보험의 예를 보면, 자동차 사고 중 손해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2% 내외이나, 금액기준으로는 33%에 달하고 있어 실제 현실화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제3자 보호제도를 규율하는 보험업법의 제3자 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이원화하여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유무 또는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예컨대 중복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는 경우라도 그 신청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 또한 보험자 또는 보장기관 입장에서는 피해액의 산출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액을 산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그 손해사정 등 사정기준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의무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보험업법상 제3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보장체계의 이원화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어 제3자 보호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이를 적절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기타사항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즉,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최고 5,000만원을 상한으로 예금자 등의 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와 보험계약자의 차이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업권별 특성 및 각 금융상품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동일하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와는 차이점이 있다. 보험계약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호의 필요성 및 정도가 차이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차제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 론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반적으로 “예금상품” 내지는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를 예금보다는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최적의 보호방법과 한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은 그 본질상 은행 내지는 예금에 국한되어 운영되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원금보장”이라는 확정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의 특성에 비하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계약이전이나 재보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계약이 유지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적다고 하겠다. 개인고객의 보호라는 취지를 위해서라면 금융상품별로 별도의 보호제도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서비스의 제공대가”라는 성격상 금전의 대차거래나 투자거래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상품별, 보험 요소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의 경우, 현행의 통합예금자보호제도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현행과 같이 통합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된다 하더라도 예금과는 달리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구분, 보험 상품 종류별 구분, 보험 상품의 요소별 구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예금적” 성격이 있는 부분과 “보험서비스”를 구별하여 보호방법 및 한도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세룡,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32760 판결”, 「민사법연구」 제13집 제2호, 대한민사법학회, 2005.
- 김선정, “일본의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김정주,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6권 제2호, 한국손해사정학회, 2014.
- 김정호·최병규·유주선·원동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연구보고서, 한국손해보험협회, 2013.
- 류근욱, “보험회사 파산시 선진국 예금보험기관의 보험금 지급 사례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1호, 예금보험공사, 2010.
-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7.
-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4.
- 양승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효과”, 「법조」 제25권 제4호, 1976.
- 유주선, 「보험법(최신 개정판)」, 씨아이알출판사, 2018.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상법강의 IV)」, 박영사, 2015.
- 이순재,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 이종호, “일본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와 국내 시사점”, 월간 「손해보험」 제594권, 한국손해보험협회, 2018.
- 임종호·이순규, “주요국의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KDIC 조사분석정보, 2018.
- 장건식, “한국의 은행 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적정성-은행의 부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 장덕조, 「보험법」 제4판, 법문사, 2018.

정경영,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보증보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정봉은,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정지만, “예금보험제도의 목포기금에 대한 논의와 기대효과”, 「사회과학연구」 제18호,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정찬우·김자봉, “서민금융기관 경영진전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Abstract>

Improvement Measures for Depositor Protection Organization under Depositor Protection Act - in the area of insurance -

Yoo, Ju Seon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are treated as a kind of financial product that is subjec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and protects them in the same way as deposits. In addi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the protection method, fund management and insurance limits of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also adhere to and maintain a uniform method. This method is operated by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is in contrast to national operating attitude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that do not include insurance companies as depositor protection category. In most countries where depositor protection is in place, depositor protection is only limited to banks or deposits. Compa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with a fixed amount of “principal guarantee”, in case of insurance, the contract is maintained through the same method as the contract transfer or reinsurance, even when the insurance company goes bankrupt. Therefore, there is less need for depositor protection in the area of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ustomers, a separat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each financial product, and in particular, insuran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from money lending or investment transactions due to the nature of “cost of providing insurance services”.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urance product and insurance element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mechanisms by distinguishing them. Insurance needs to seek ways to focus on protecting policyholders independently of the

current integrated depositor protection system. In conclus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and insurance. Life insurance has relatively a long-term contract and a lot of savings insurance, so there will be many cancellation refunds, but non-life insurance has many short-term contracts and guarantee insurance is mainly composed, and the procedure of calculating insurance claims when paying insurance claims is very important. In this regard, separate depositor protection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e each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Key Words : Depositor protection organization, insurance and deposit, third party protection system,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insurance business law

